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525336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소관 : 가산기술평가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 2019. 5. 30.

판결 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57,869,872원 및 그 중 456,763,712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에 관한 2018. 6. 27.자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C 보증원금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6.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7. 6. 27. D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의 구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피고가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 · 파산 신청을 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위 피고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8. 5. 28. 이래이자연체 사태에

빠졌다가 결국 2018. 7. 25. 원금연체로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8. 10. 29. D은행에 456,777,272원(원금449,987,130원 + 이자 6,790,1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8. 10. 29. 위 대위변제금 중 13,560원을 회수함으로써, 그 잔존대위변제금은 456,763,712원(456,777,272원 - 13,560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3원 $\{13,560\text{원} \times 10\% \times 1(2018. 10. 29. \sim 2018. 10. 29.) \div 365, \text{원 미만버림}\}$ 이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670,660원 $(450,000,000\text{원} \times 1.6\% \times 34(2018. 9. 25. \sim 2018. 10. 28.) \div 365, \text{원 이하 버림})$ 이다.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429,497원이다.

마. 피고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8. 6. 27. 확정채권양도(이하 '이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6. 29. 접수 제57263호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 이후 2018. 7.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32,000,000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1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57,869,872원(잔존대위변제금456,763,712원 + 일부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3원 + 미수추가보증료 676,660원 + 법적절차비용 429,497원) 및 그 중 456,763,712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2. 22.까지는 약정 이율의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로 양수받은 근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있는 것인데,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32,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그 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약속어음금의 변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11.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280,000,000원, 지급기일이 2018. 3. 30.인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은 피고 B인 사실, 피고 B은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수탁입금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 회사에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4. 9. 피고 B에게 2018. 4. 30.까지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 피고 회사는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6. 27. 그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은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채권최고액인 36,000,000원을 상한으로 하므로 피고 B의 채권의 액수에 비하여 근소하며, 채권양도와 근저당권 이전으로써 피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동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평가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부수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빈

별지

근저당권 목록

아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17. 5. 19. 접수 제44492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 명의의 근저당권.

아 래

1. 양주시 H 공장용지 1328㎡
2. 양주시 I 답 1705㎡ 끝.